



지급결제 부문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및 은행권 대응 방향

최명원*

I. 들어가며	49
II.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50
1. 개요	50
2. 시장 일반 및 규율 현황	55
III.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59
1. 민간 부문 활용 동향과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와의 비교	59
2. 정부·공공 부문 활용 사례	67
IV.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72
1. 대고객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경쟁에 선제적 대비	72
2. 기업 신뢰 기반 선제적 스테이블코인 B2B 거래 모델 구축	74
3. 공공 부문과의 협업 가능성 모색	76
4. 규제준수 및 거래지원 인프라 관련 은행권 공동대응 고려	78
V. 맷으며	79
참고문헌	80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E-mail: myung1@kftc.or.kr)

〈요약〉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한 유형으로, 2025년 3분기 기준 시가총액이 약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결제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지급결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Circle의 Circle Payments Network(CPN)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가간 자금을 실시간·저비용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SWIFT 구조에서 필요했던 중계은행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가 스테이블코인 FRNT 발행을 추진하며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설계 중이다.

지급결제는 부문은 효율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지만, 여전히 구조적 비효율이 잔존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있다. ① 중계은행 수수료와 처리 기간 이슈가 있는 국가 간 결제, ② 막대한 자금규모로 인해 유동성 부담이 큰 B2B 결제, ③ Web3 생태계 하의 DApp 기반 지급서비스 등이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는 적용분야라 생각된다.

이에 은행권은 개인 고객의 잠재적 수요에 대비해 뱅킹앱 내 스테이블코인 온·오프램프 및 지급 기능 도입, 주요 DApp과의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신뢰성과 기존 사내 시스템 연계를 중시하는 기업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가간·기업간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 등 공공부문 정책사업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역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상환보장·준비자산 검증 등 규제 준수 및 개별 인프라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에 속도를 내며 국내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은행권이 창조적 파괴의 흐름 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응을 더 늦출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험해보는 것은 차세대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설명회 자료〉

1. 들어가며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by Joseph Schumpeter

: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기술이 기존의 것을 붕괴하는 것
⇒ 일시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됨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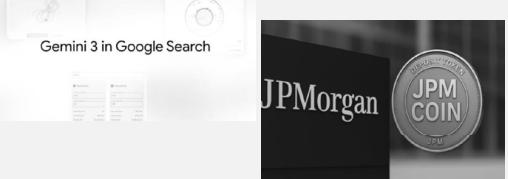


지급결제시장에서는?

현금의 종말?…CD·ATM 이용액 '25년 만에 최저'
갈수록 돈 찾기 어렵네…은행 ATM 네
곳 중 한 곳을 사라져
지난해 현금 이용 10%대, 7년 만에 '반도막'

현 지급결제시장에서 창조적 파괴 → 스테이블코인?

단, 혁신은 기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 보완할 수도 있음



자사 산업이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선도자가 되려 노력

스테이블코인으로 하여금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의 플레이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선점하여 향후 다가올 창조적 파괴에 대비 필요

지급결제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

지급결제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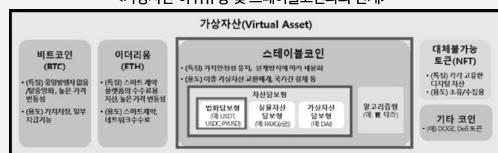
1

2.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 가. 개념 및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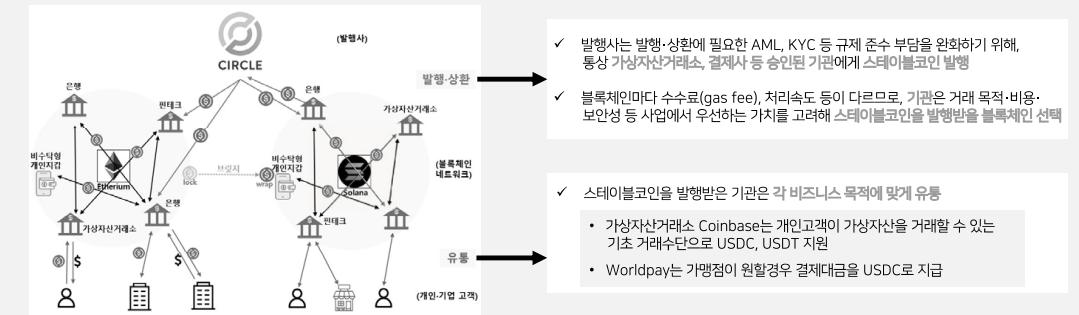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가상자산의 하위 유형

- 발행: 발행사에 법화를 입증하여 해당 법화 가치에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 생성(mint)
- 상환: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에 전송하여 이를 소각(burn)한 후 동일한 금액의 법화를 현금화
- 발행사는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예금, 국채 등 지정된 자산으로 관리

<가상자산 하위유형 및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및 유통 예시>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2

2.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 나. 시장규모 및 활용 현황

시장 규모

- ✓ EU,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꾸준히 상승
 - * 2025년 3분기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 약 3,000억 달러
- ✓ 그 중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약 92.5%로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USDC가 약 85%를 차지
- ✓ 달러의 이준도 심화 해소, 통화주권 확보, 국가간 결제 혁신 등을 위해 각 국가에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 * 단위 : 10억 달러
 - USDT
— USDC
— USDS
— Ethena USDe
— Total Stable Coin Market Cap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

자료 : IMF(2025)

활용 현황

- ✓ 2024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26.1조 달러로, 가상자산 매매 및 법화 상환 거래가 약 92%로 대부분을 차지
- ✓ P2P, B2C, B2B 등 지급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중은 5%로 아직 미미
- ✓ 글로벌 기업도 지급결제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음

<기업 유형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경험 여부>

부문	적극 사용	사용 경험 있음	사용 경험 없음
총합	17%	1%	87%
금융 부문	7%	1%	91%
비금융 부문	22%	1%	77%

자료 : EY Parthenon(2025)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관심 분야>

분야	관심도
해외 공급업체 대금 대금	77%
해외 기업 간 대금 이동	49%
국내 기업간 대금 이동	37%

자료 : EY Parthenon(2025)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3

2.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 다. 주요국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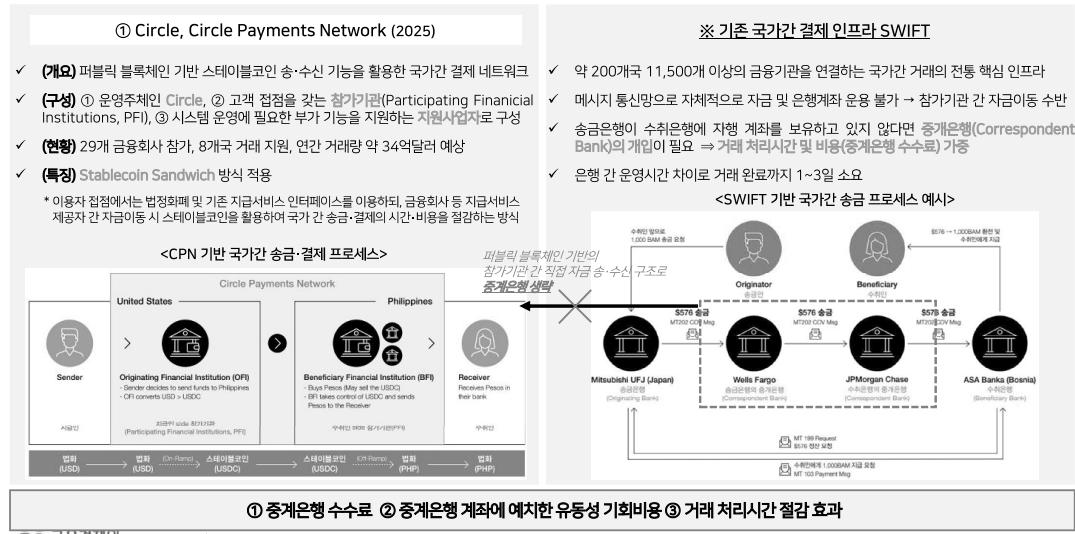
- ✓ 국내 :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넘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입법이 현재 추진 중
- ✓ 해외 : 미국,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 * 법행자격, 준비자산, 상환보장, 이자지급 금지, 외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역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등

구분	미국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규제 대상	「GENIUS Act」	「MICA」	「자금결제법」	「Stablecoins Ordinance」	「지급서비스법(PS Act)」, 「SCS 프로일링법」
법령자격	지급수단 유통으로 설계되어 고정된 화폐기준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디지털자산	단일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EMT)과 기타 자산준거도록(ART)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진정형의 상환 담보형으로 이를 제외한 임포자산)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과 통화는 기형 스테이블코인 (진정으로 허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일반화폐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디지털기금) 상으로, 따라서 발행되는 디지털화폐(디지털화폐법)
준비자산	부부 예금기관과 저당권, 연방 주 상인 발행자, (조건부) 비금융 상장회사	EU 내에 유통·전자화폐기관	통행, 제2증 자금이동업자, 신용은행·신탁회사	홍콩 내 상인법인 또는 홍콩 내 본점·사업장을 통한 외국법인	온전비온행, 비온행은 유통액 \$500만 원 초과 시 「SCS 프로일링법」 적용
상환보장	1.1 속수으로 현금화지급, 미국 단기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상환보장자금을 보유하는 저당권자에게 상환보장	최소 30% 운행 예지, 나머지는 저당권·고용통장·자산에 투자 가능	상례·공탁·상탁 시금보증 (신탁형의 경우, 발행액 50%까지 단기국채·예금 운용 가능)	고용통·고유증·자금현금 예금·정부·공공체·단기대출 등으로 보유·액면가 이상 유지·신탁 분리보증	제3종화폐 표시법, 저축·고용통·자산으로 최소 100% 유지·적색 수색기준에 신속 분리보증
이자지급	보유·사용·보관에 대한 이자·수수료 지급 금지	발행자, 및 제3자인 이자 (보상세대 포함) 시금 지급	-	보유기간·액면기간·상환기한 관련 일체의 이자·수익 지급 금지	1영업일 내 예연기 상환 의무 5영업일 내 예연기 상환 의무, 상환조건 사전 공개
외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GENIUS Act」 요청 충족 시 미국 내 발행 가능	「MICA」 요청 충족 시 발행 가능(단, ART 모니터링, 발행제한 규정 일부 준용)	「자금결제법」 요청 충족 시 발행 가능	규제 준수 조건으로 홍콩 내에서 발행 가능	G10 회의의 경우 「SCS 프로일링법」, 요청 충족 시 발행 가능
역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동	증정한 수준의 규율체계보유국 내 규제기준 강화 & 통화감독 청 등록 & 미 유통기관에 준비자산 보유 시 미국 내 재정 관리에 가능	MICA 요청 충족 시 EU 내 공모상장 가능	일본과 증정한 수준의 발행자·준비자산 감사 요청 충족 필요	규제 준수 조건으로 유통 가능	「지급서비스법(PS Act)」 준수 조건으로 유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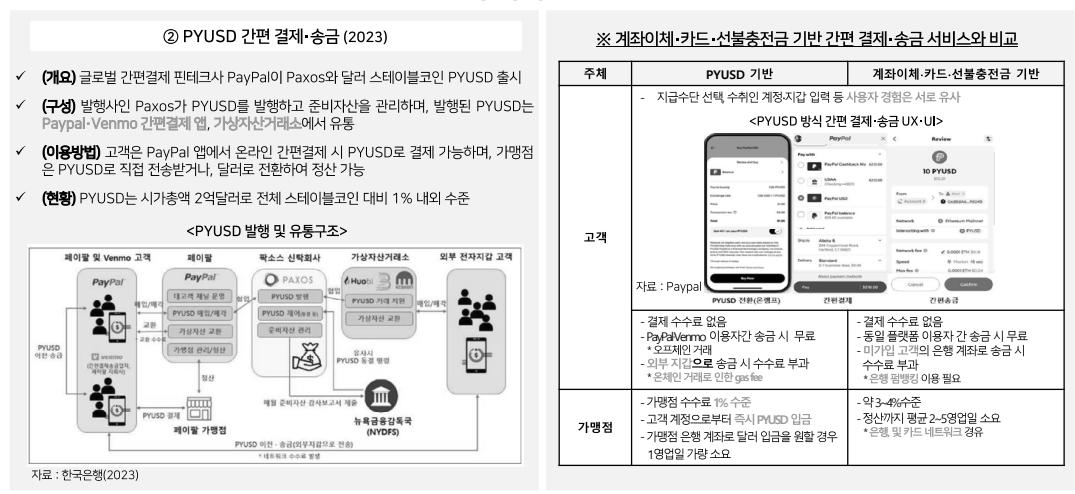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4

3.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 가. Circle Payments Network (CPN)



3.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 나. PYUSD 기반 간편 결제·송금



3.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 다. 공공 부문

미국 와이오밍(Wyoming)주 스테이블코인 FRNT 출시 (2025)

- ✓ **(개요)** 미국 와이오밍주 주정부는 2025.8월 달러 스테이블코인 FRNT 출시
- ✓ **(추진경과)**

2023 규제체계 마련	2024 거버넌스 확립	2025 기술 구현
스테이블코인위원회(발행주체) 설립, 스테이블코인 법 제정	준비자산 유형 및 보유한도 등 규정	이더리움, 솔라나 등 7개 블록체인에 배포 및 테스트

- ✓ 준비자산은 발행액 대비 최소 102%의 준비자산을 달리 및 국채로 보유
- ✓ 주정부 연간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 예정
 - * 현재 주 소재 기업과 연계하여 해당 기업의 기증 서비스와 FRNT 연계 프로그램 구상 중

<논의 중인 FRNT 파일럿(Pilot) 프로그램 예시>

분야	내용
공공기관 대금 일부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주정부와 공급업체 간 계약·검증·대금납부를 자동화하고 0%의 지급수단으로 FRNT 활용
소상공인 금융	와이오밍 주 지방은행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대상 대출·상환에 FRNT 활용
B2B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개별 가족에 대한 품종, 예방접종 기록 등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토큰화하여 관련 업체·대출기관·도축업체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함 - 가축 거래 시 FRNT를 지급수단으로 하여 온체인 결제

공익 연계 및 행정처리 강화 측면 정책 실험으로 주목

* 준비자산 운용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계약금 지급 및 세금 징수 등 효율화

스위스 루가노(Lugano)시 USDT 활용 (2022~)

- ✓ **(개요)** 루가노시 지방정부와 USDT 발행사 Tether가 출범한 민관 협력사업 Plan B 이니셔티브에서 추진
- ✓ **(추진내용)** USDT와 비트코인, 지역화폐 토큰 LVGA를 시내 상거래 및 공공수납 등에 사용
- ✓ **(현황)** 현재 프레차이즈, 미술관 등 450여개 기관과 지급결제 및 공공수납에서 이용 가능
 - * LVGA 결제 전용앱은 루가노 시 인구 6만명 중 5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충수한 실적

<루가노 시 기관점 스테이블코인 지급 절차>



자료 : Instagram 소비자 리뷰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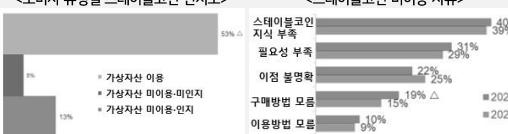
7

4.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 가. 대고객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경쟁에 선제적 대비

전망 : 고객의 실질적 수요 확보와 이를 위한 온보딩이 관건

- ✓ 통상 지급결제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시례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논의
 - * 거래비용 절감, 정산 효율성 제고, 준비자산 운용수익 등 공급자 입장 이익에 초점
- ✓ 개인 관점 :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는 충분히 효율적 → 새로운 지급수단을 찾을 유인 부족
- ✓ 실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인 고객의 인지도 및 수요는 낮은 수준

<소비자 유형별 스테이블코인 인지도> <스테이블코인 미이용 사유>



자료 :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24)

- ✓ 결국 지급결제서비스 확산은 수요 → 공급 방향으로 전개
 - * EY-Parthenon의 '2024 Global Corporate Stablecoin Survey' 결과, 응답기업 약 60% → '거래 상대방 중 2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원할 경우에만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 응답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정착하려면, 개인 고객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온보딩 및 유인 제공이 필요

대응 방향 ①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준비

<p>개인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인지도·유인 부족</p> <p>Now,</p> <p>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 영역 진입 + Web3.0 서비스의 이용고객 확대</p>	<p>개인 지급 영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정착 가능성 희박?</p> <p>SNS,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Web3.0 기반 DApp 출시 및 이용고객 확대</p>
---	---

가상자산 사업자 Coinbase

SNS·결제·송금을 통합구성화 환경에서 통합 제공하는 슈퍼앱 BASE 출시

- ✓ 고객은 개인 계시물을 NFT화하여 수익 창출 등 새로운 경합으로 엘리트 유입
- ✓ 앱 이용 과정에서 USDC 송금·결제 경험

<Base 앱 기능별 화면 예시>



자료 : Base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온보딩, DApp의 유인제공에 선제적 대비 필요
→ 고객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선점

* 예. 뱅킹 앱 내 스테이블코인 지급·송금 기능 구축, DApp과 지급서비스 연계 등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8

46 금융결제 Trend & Issue 연구보고서(2025.12.)

4.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 나. 기업 신뢰 기반 스테이블코인 B2B 거래 모델 구축

전망 : 기업은 기존 금융파트너와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선호

- ✓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온·오프램프 제공자, 발행자로 은행을 선호하는 경향
- ✓ 기존 사내 자금관리 및 결제 플랫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API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유형별 선호도>

자료 : EY Parthenon(2025)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거래 방식 선호도>

자료 : EY Parthenon(2025)

기관의 신뢰도, 기존 거래와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서비스 파트너사로 은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대응 방향 ② 기업 내부 인프라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B2B 결제 서비스 제공

- ✓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관심영역인 국가간(Cross-border)·기업간(B2B) 결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24/7/365 결제 환경 구축
- ✓ 기업의 내부 시스템 연속성 선호 경향을 고려하여 구축

※ JP Morgan의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기업결제 플랫폼 Kinexys Digital Payment(KDP)

- 기업 대상 USD, EURO 등 다종통화 실시간 결제 서비스 제공
- Global Payments API를 통해 기업의 기존 자금관리 시스템과 연동
- * 기업은 API를 통해 KDP 내 블록체인 예치 계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금 송금 가능

<KDP 프로세스>

자료 : JP Morgan Developer

기존 기업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선호를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B2B 결제 시스템 선제적 구축 필요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9

4.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 다. 공공 부문과의 협업 가능성 및 규제준수·거래지원 인프라 관련 공동대응 검토

대응 방향 ③ 공공 부문과의 협업 가능성 모색

- ✓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민간사업자 대비 높은 신뢰성이 강점
- ✓ 지역사회 협력체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에 있어 은행권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을 정부·지자체와 함께 검토 가능

※ 일본 이시키와현·홋코쿠은행 애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Tochika 발행

- Tochika는 2024년 4월 일본 최초 지방정부 주도로 발행된 애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시키와현 소재 지방은행 홋코쿠은행(Hokkoku Bank)에서 직접 발행
- 고객은 Tochika로 2,500여개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결제
-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맹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고객에게는 0.5% 리워드 제공
- ⇒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디지털 지역화폐 서비스

<Tochika 발행(충전) 및 결제 프로세스 예시>

자료 : Tochitsuka - おはな銀行

정부의 정책 니즈를 파악하고, 공공 부문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구조, 서비스 운영 방식 등 전략적 검토 필요

대응 방향 ④ 규제준수·거래지원 인프라 관련 은행권 공동 대응 고려

- ✓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KYC, AML, 준비자산 검증, 이상거래·사기탐지 등 다양한 안전성 요건 부과 예상
 - ⇒ 각 은행 개별 수행 시 비용 부담 과증 및 정책 실효성 감소 우려
- ✓ 향후 스테이블코인은 법화 기반의 현금·계좌이체·카드 등 지급수단과 공존 예상
 - ⇒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신뢰와 편의성 확보 필요
 - (예. 언제든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법화로 전환할 수 있는 온·오프램프 인프라)
- ✓ 다만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사업자에 의해 다양한 블록체인에 발행·유통 예상
 - ⇒ 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 방식과 기업 대상 블록체인의 재배포 방식으로는 이용고객 관점 온·오프램프 편의성 확보 어려움

① 규제 준수 및 거래지원 인프라 구축 시 공동대응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 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유동사 간 상호호환 가능한 공동 상환 인프라 등 거래 지원 인프라 공동 구축

② 기존 오프체인 인프라 연계 활용을 통한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효용 극대화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10

5. 맷으며

Q. 지급결제 부문에서 '창조적 파괴' 가능성?

-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효용은 다소 제한적
 - * 이미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은 시장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유인이 타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But, 구조적 비효율이 남아 있거나 새로이 기술·서비스 혁신이 등장하는 영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 존재
 - ① 중계은행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이슈가 있는 Cross-border
 - ② 대규모 자금 사전 예치에 따른 유동성 기회비용이 큰 B2B
 - ③ Web3.0 생태계 하의 DApp 기반 지급서비스

다양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인프라 효율성 개선 실험에 본격 착수

- 특히, 국내 기업 고객과의 접점도 빠르게 확대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JP모간 키넥시스와 MOU…
블록체인 결제 도입

원화코인 발행 못 했는데...JP모건 코인침투에 은행 비상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평가와 규제가 확립될 때까지 단순히 관망하는 것은 향후 지급결제시장 경쟁에서 자칫 뒤쳐지는 결과 초래

특정 영역에서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효율성 개선 여지가 큰 영역을 탐색하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실험



금융결제원 조사연구설명회 자료(2025.12.)

11

I. 들어가며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¹⁾ 동 이론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것을 붕괴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시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됨을 주장한다.

올해 노벨위원회에서도 해당 이론에 주목했듯이 최근 몇 년 산업계 전반의 트렌드는 창조적 파괴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주목받으면서 AI 기술은 단순한 보조수단을 넘어 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AI 관련 생태계 구축에 투자한 기업들이 각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²⁾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소비자의 자금이동과 직접 연관되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변화에 보수적인 지급결제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주요 지급수단이었던 현금은 카드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월렛 등의 활성화로 사용률이 지속 감소해왔고, 이는 ATM 시장의 축소로 이어졌다.³⁾

기존의 변화가 실물 화폐 거래에서 디지털 방식의 전자지급거래로 전환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자산이 주목받으면서 지급결제 부문에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가치 안정성을 지니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중앙화 방식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잠식 또는 대체하거나 주도적 시장 플레이어를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핀테크,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결제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서비스 발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창조적 파괴는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미 효율성과 완결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일부 보완적 형태로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장의 기존 플레이어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해당 영역의 사업에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향후 다가올 창조적 파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국내 역시 아직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1) 조엘 모키어(Joel Mokyr),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피터 하윗(Peter Howitt)은 역사적·수학적·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 이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는 Exxon Mobil, Wells Fargo, JPMorgan Chase 등 전통 산업 및 금융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들 대부분이 NVIDIA, Broadcom 등 AI 생태계의 기술 기업들로 대체되고 있다.

3) 지급수단 중 현금의 비중은 2013년 기준 41.3%에서 2024년 기준 15.9%로 감소하였다(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25. 3.). CD공동망을 통한 ATM 이용금액은 2025년 6월 기준 약 14조원으로, 2025년 6월 약 24조원 대비 40% 감소하였으며(금융결제원 통계자료), ATM 대수도 2025년 7월 기준 약 2만5천개로 5년 사이 약 2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한겨레, 갈수록 돈 찾기 어렵네…은행 ATM 네 곳 중 한 곳꼴 사라져, 2025. 9.22.,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19937.html>)

가치판단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시장의 어느 부문에서 기존 레거시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운영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글로벌 시장 및 규율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해외 지급결제 부문에서 민간·공공이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고 기존의 유사한 인프라 대비 차별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영역 및 방식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를 예상해 보고, 은행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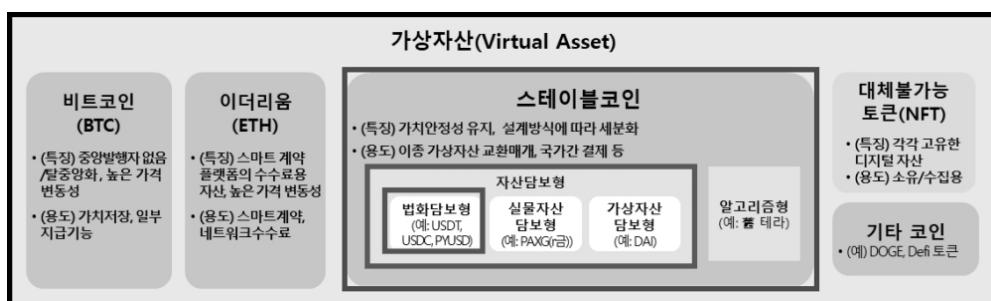
II.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1. 개요

가. 개념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가상자산의 하위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 가상자산이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이전·보관되는 디지털 금융자산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USDT 등이 해당된다. 기존 가상자산은 공급량 제한과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 실물경제에서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해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였다(그림1 참조).

〈그림1〉 가상자산 하위유형 및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



4) 가상자산 이외에 암호자산(Crypto Asset),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등의 용어로도 지칭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상자산이라 통칭한다.

나. 운영 메커니즘

1) 가치 안정성 확보 방식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핵심 요소인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자산담보형과 알고리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1 참조). 자산 담보형은 발행액의 가치에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준비자산을 법정화폐, 실물자산, 가상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알고리즘형은 별도의 준비자산 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2년 대표적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UST)의 가치 붕괴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표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확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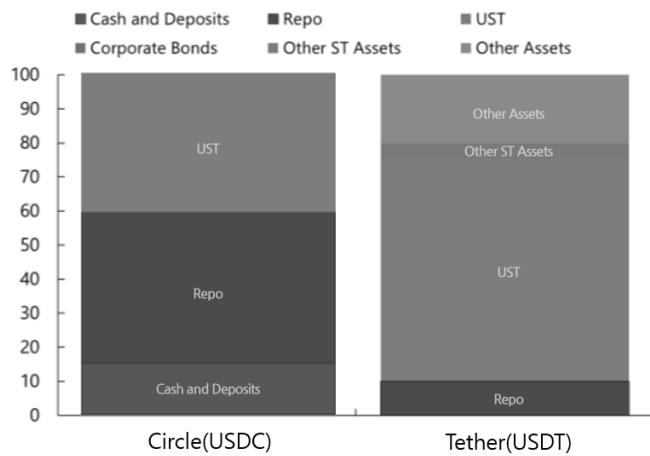
구 분	자산담보형			알고리즘형
	법화담보형	실물자산담보형	가상자산담보형	
가치 유지 방식	발행액에 상응하는 법화(현금, 예금, 국채 등)를 담보로 발행하여 교환비율 유지	발행액에 상응하는 실물자산(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여 교환비율 유지	발행액에 상응(또는 초과)하는 가상자산 (ETH 등)을 담보로 발행하여 교환비율 유지	차익거래 알고리즘으로 수요·공급을 조정하여 가치 유지 (별도 담보 없음)
해당 예	USDT, USDC, PYUSD	PAXG	DAI	舊 UST(테라)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 달러에 연동된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USDC의 경우 발행액과 1:1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현금 및 예금, 미국 단기국채 및 환매조권부 채권 등의 형태로 관리한다. 또 다른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USDT의 경우에는 미국 단기국채 등 저위험자산에 81.5%를 예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18.5%는 금, 기타 가상자산 등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그림2 참조).⁵⁾ 한편 가상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 DAI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나 여러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가상자산별로 설정된 최소담보비율이 유지되도록 준비자산이 관리된다. 최소담보비율은 담보가치가 발행액 대비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념으로, DAI의 경우 담보물인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있는 만큼 통상 초과 담보를 요구한다.⁶⁾

5) Tether, FAQ, 2025.11.11., <https://tether.to/en/faqs/>

6) DAI는 USDC나 USDT 등과 달리 중앙화된 발행사가 없고, 사용자가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직접 발행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이다. 개인 고객은 보유한 특정 가상자산을 담보로 예치하고 해당 가상자산에 사전 설정된 최소담보비율을 준수하는 만큼의 DAI를 발행한다. 이후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최소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DAI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더 예치하는 등 개인의 관리가 필요하며, 최소담보비율을 미달할 경우 담보가 자동 청산된다. 최소담보비율은 담보한 가상자산마다 상이하며 통상 150% 수준이다(Maker Dao, White Paper - The Maker Protocol:MakerDAO's Multi-Collateral Dai(MCD) System, 2020. 2.).

〈그림2〉 주요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보유 현황^{주)}



주) 2025년 6월 기준

자료 : IMF, Crypto Assets Monitor, 2025.10, 13p

2) 발행 · 상환 및 유통 구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발행사에 법화를 입금하고 해당 법화 가치에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생성(mint)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환은 반대로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에 제시하여 이를 소각(burn)한 후 동일한 금액의 법화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발행사는 발행 · 상환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 가상자산거래소, 결제사 등 기관에게 계정을 부여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USDC의 경우 발행사인 Circle은 KYC 절차를 마친 기관에 대하여 전통 금융계좌와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연계하여 USDC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Circle Mint 계정을 발급해 준다. 기관은 해당 계정을 활용하여 〈그림3〉의 절차에 따라 Circle로부터 USDC를 발행 · 상환할 수 있다.

〈그림3〉 USDC 발행 · 상환 절차



기관은 발행받은 스테이블코인을 각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시장에 유통시킨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인 Coinbase와 Binance는 개인 고객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초 지급수단으로 달러 등의 법정통화 외에도 USDC, USDT 등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한다. 카드 네트워크사인 Visa는 일부 파트너사와의 국가간 정산 프로세스에서 USDC 온체인 전송을 활용하는 옵션을 도입하였으며, 가맹점 매입사인 Worldpay와 Nuvei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정산대금을 USDC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월렛 플랫폼사인 Paypal과 Venmo는 고객이 자사앱에서 법정화폐로 스테이블코인(PYUSD)을 구입하여 보유·송금하거나, 이를 가상자산 거래 및 일부 제휴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리하면 발행사는 통상 기관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등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나 결제사 등 기관은 개인·기업 고객이 분산원장기술과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기술을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익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전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확산은 발행사의 안정적인 준비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와 유통 역할을 하는 기관의 규제 대응력 및 서비스 설계 역량 모두에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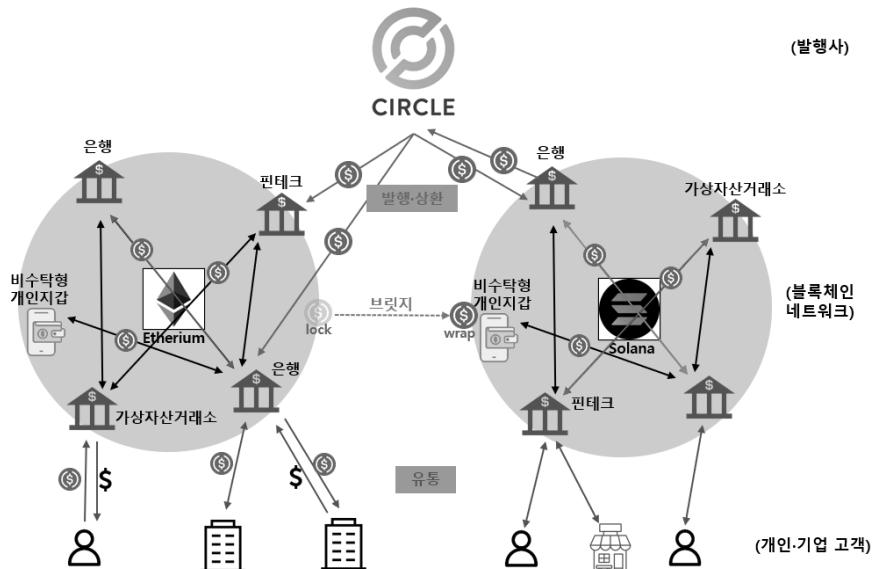
〈참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과 블록체인과의 관계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원장(ledger)을 공유하며 합의를 통해 거래를 검증·기록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생성·보관·이전된다. 예를 들어 USDC는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아발란체(Avalanche), 폴리곤(Polygon), 베이스(Base) 등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발급되며⁷⁾, 각 네트워크는 독립된 장부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잔액 및 이동 내역을 기록한다.

통상 발행사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각 스마트컨트랙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마다 수수료(gas fee), 처리속도, 생태계 구성 등이 다르므로, 기관은 거래 목적·비용·보안성 등 서비스에서 우선하는 가치를 고려해 발행사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반을 네트워크를 선택한다. 반면 개인 고객은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나 결제사 플랫폼을 경유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므로 어떤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는 직접 스테이블코인 전송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원본 체인에서 토큰을 잠금(lock)하고 대상 체인에서 복제된(wrapped) 토큰을 발행하는 브릿지(Bridge) 기술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브릿지 자체의 오류나 해킹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위협이 확산될 수 있어, 발행사는 브릿지를 보수적으로 활용하며 여러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Circle이 도입한 Cross-Chain Transfer Protocol(CCTP)은 원본을 소각(burn)하고 대상 체인에서 동일 금액을 재발행(mint)하는 방식으로 총량 유지 및 회계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스테이블코인 유통 예시



7)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이며, 프라이빗(또는 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전 승인된 참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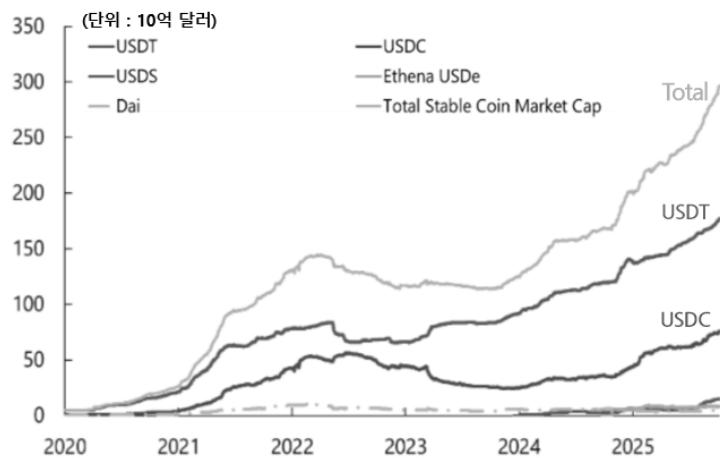
2. 시장 일반 및 규율 현황

가. 시장 규모 및 주요 스테이블코인

2014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BitUSD를 시작으로 USDT(2014), DAI(2017), USDC(2018)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고, 점차 DeFi⁸⁾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DeFi 서비스에서의 안정적인 교환의 매개로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T)의 가치 폭락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미국에서 親가상자산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다시 꾸준히 성장하여, 2025년 3분기 시가총액 기준 약 3,000억달러에 도달하였다(그림4 참조).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은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약 92.5%로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USDT, USDC 등 상위 2개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약 85% 이상을 과점하는 구조이다(표2 참조). 다만, 두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다보니 최근 달러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해소, 통화주권 확보, 국가간 결제 혁신 등을 위해 각 국가에서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4〉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추이



자료 : IMF, Crypto Assets Monitor, 2025.10, 9p

8) DeFi(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증권사 등의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출·예치·교환 등의 거래가 가능한 텔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표2〉 주요 스테이블코인 특징

구 분	USDT	USDC	DAI	PYUSD
유형	법화담보형	법화담보형	가상자산담보형	법화담보형
발행사	Tether	Circle	탈중앙화	Paxos
출시시기	2014년	2018년	2017년	2023년
점유율 ¹⁾	60.9%	24.3%	1.6%	1.2%
주요특징	시가총액 1위, 낮은 투명성, 국채/MMF/담보대출 등 다양한 담보	규제친화적, 높은 투명성, 단기 국채 중심 담보	가상자산 담보, DeFi 활용	기존 결제서비스 (페이팔) 연계

주1) 2025.11.24. 시가총액 기준(defillama.com)

나. 활용 현황

2024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26.1조 달러로, 이 중 가상자산 매매와 온·오프램프(On·Off-Ramp)⁹⁾ 거래가 약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P2P, B2C, B2B 등 지급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중은 약 5%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¹⁰⁾

글로벌 기업은 아직 자사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진 않다. 2025년 6월 EY-Parthenon이 연매출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영진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스테이블코인 사용률은 13%로 다소 저조했으며, 주로 해외 기업 간 결제 및 자금관리 등 국가간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참조).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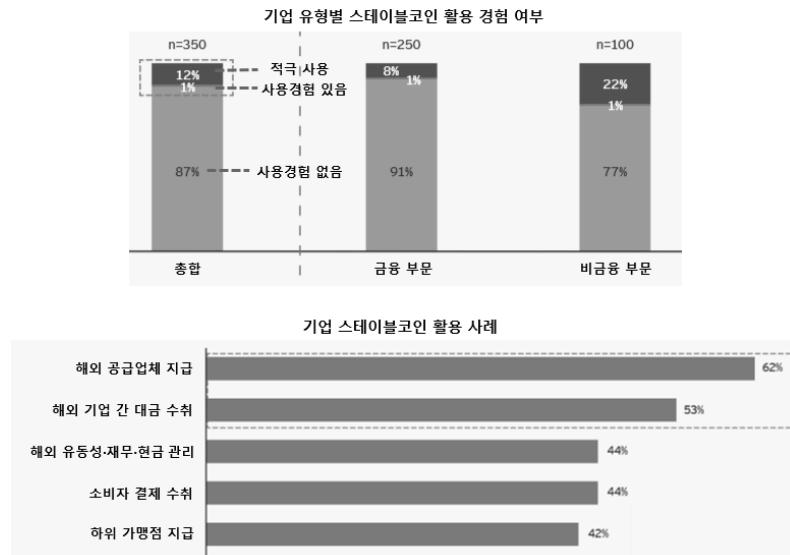
그럼에도 글로벌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망은 꽤 긍정적으로 보인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 중 54%는 6개월에서 1년 내 자사 업무 운영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로는 거래비용 감소, 신속한 국가간 결제, 중단 없는 정산 및 자금이동 등이 있다.

9) On-Ramp는 법화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Off-Ramp는 가상자산을 법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BCG, Five killer tests to gauge their potential, 2025. 5.

11) EY-Parthenon은 2025년 6월 미국과 EMEA의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금융·비금융 기업 임원 350명(비금융 기업 250명, 금융기관 100명)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인식을 조사했다(EY-Parthenon, Stablecoins in focus: navigating the new digital financial landscape, 2025. 9.).

〈그림5〉 스테이블코인 활용 현황



자료 : EY-Parthenon, Stablecoins in focus: navigating the new digital financial landscape, 2025. 9, 7 · 11p

한편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저하는 주요 장벽은 규제의 불명확성(73%), 회계·세금 처리의 어려움(38%), 한정된 은행 파트너십(29%) 등으로 제도 측면의 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효율성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회계 등 제도적 기반이 명확히 정비되어야 실제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²⁾

다. 규율 현황

국내는 기존의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넘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5개국 규율체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행자격, 준비자산, 상환보장, 이자 지급 금지, 외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역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3〉과 같다.¹³⁾

12) 다만 해당 설문조사 이후로 미국에서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를 통과하는 등 규제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규제 불명확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

13) 장한샘, 주요국의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금융결제원 해외 디지털금융 브리프 제8호, 2025.10.

〈표3〉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구 분	미국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규율 명	『GENIUS Act』	『MiCA』	『자금결제법』	『Stablecoins Ordinance』	『지급서비스법(PS Act)』,『SCS 프레임워크』
규제 대상	지급수단 용도로 설계되어 고정된 화폐가치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디지털자산	단일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EMT)과 기타 자산준거토론(ART)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과 이를 제외한 암호자산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지정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에 해당하는 디지털지급수단(DPT)과 싱가포르 내에서 발행되는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
발행자격	부보 예금기관 자회사, 연방·주 승인 발행자, (조건부) 비금융 상장회사	EU 역내 은행·전자화폐기관	은행, 제2종 자금이동업자, 신탁은행·신탁회사	홍콩 내 설립법인 또는 홍콩 내 본점·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은행·비은행, 비은행은 유통액 \$500만 초과 시 『SCS 프레임워크』 적용
준비자산	1:1 수준으로 현금·예치금·미국 단기국채 등으로 구성, 재담보·재사용 금지, 매월 공시·검토	최소 30% 은행 예치, 나머지는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에 투자	전액 공탁·신탁·지급보증(신탁형의 경우 발행액 50%까지 단기국채·예금 운용 가능)	고품질·고유동성 자산 (현금·예금·정부/공공채, 단기채권 등)으로 보유, 액면가 이상 유지, 신탁 분리보관	폐기통화로 표시된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최소 100% 유지, 적격 수탁기관에 신탁 분리보관
상환보장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 보장, 상환절차·수수료 정책 공시	액면가 상환 상시 보장, 상환수수료 금지	지체 없이 상환, 절차 사전 고지	1영업일 내 액면가 상환 의무	5영업일 내 액면가 상환 의무, 상환조건 사전 공개
이자지급	보유·사용·보관에 대한 이자·수익 지급 금지	발행자 및 제3자의 이자(보상·혜택 포함) 지급 금지	-	보유기간·액면가·시장가치 관련 일체의 이익·수익 지급 금지	이자 지급 금지
외국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GENIUS Act』 요건 충족 시 미국 내 발행 가능	『MiCA』 요건 충족 시 발행 가능 (단, ART 모니터링·발행제한 규정 일부 준용)	『자금결제법』 요건 충족 시 발행 가능	규제 준수 조건으로 홍콩 내에서 발행·유통 가능	G10 통화의 경우 『SCS 프레임워크』 요건 충족 시 발행 가능
역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동등한 수준의 규율체계보유국 내 규제기관 감독 & 통화감독청 등록 & 미 금융기관에 준비자산 보유 시 미국 내 제공·판매 가능	MiCA 요건 충족 시 EU 내 공모·상장 가능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발행자격·준비자산·감사 요건 충족 필요	규제 준수 조건으로 유통 가능	『지급서비스법(PS Act)』 준수 조건으로 유통 가능

III.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 정비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지급결제 부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카드사, 핀테크 등 기존 지급 서비스 제공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및 사업 준비를 가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도 기존 가상자산 거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송금·결제 등 지급결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 핀테크, 가상자산 업계 모두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 모델을 탐색하는 상황에서, 향후 지급결제 부문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지급결제 부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적용된 신규 사례와 이와 유사한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 간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지급결제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로 공공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간 부문 활용 동향과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와의 비교

가. Back-end 서비스 : Circle Payments Network(CPN)와 SWIFT

지급결제 인프라는 크게 은행, 카드사, 핀테크 등의 결제사가 개인고객 및 가맹점과 접점하여 결제, 송금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Front-end와 기관 간 자금이동 및 정산을 담당하는 Back-end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 결제는 여러 Back-end 인프라 및 결제사가 개입되어 거래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영역으로, 효율성 개선 니즈가 높다보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1) CPN 개요

글로벌 2위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현재 달러,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중인 Circle은 2025년 4월, 국가간 결제 시스템 Circle Payments Network(CPN)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CPN은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USDC, EURC) 간의 전환과 참가기관 간 스테이블코인 송·수신을 제공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로, 참가기관 간의 국가간 자금이동을 실시간·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¹⁴⁾

CPN은 운영주체인 Circle과 고객 접점을 갖는 참가기관(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PFI),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부가 기능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자가 참가하는 구조이다.

Circle은 CPN의 운영자로서 CPN의 규정과 표준 수립, 스마트컨트랙트·API 등 인프라 관리, 보안·리스크 모니터링 등 시스템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참가기관(PFI)은 은행 등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으로 CPN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에 국가간 자금이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해외 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기관은 CPN을 이용하기 위해 CPN 규정 준수와 자국 규율체계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 라이선스 요건 등을 충족할 의무를 가진다. CPN 지원 사업자는 참가기관이 CP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 지갑, 빌링 등의 부가 기능을 지원한다.

2025년 3분기 Circle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CPN은 올해 5월 개시하여 현재 29개 금융회사가 참가하였으며, 자격 심사 중인 회사는 55개, 참가 검토 중인 회사는 약 500개인 상태이다. 현재 8개 국가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량은 약 34억 달러로 추정된다.¹⁵⁾

2) CPN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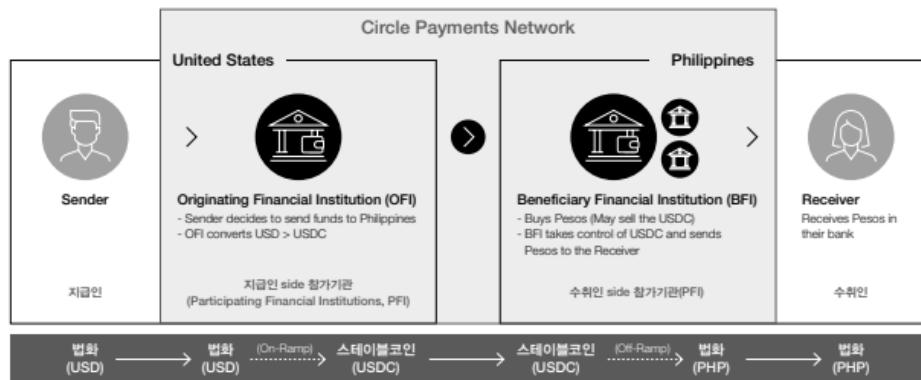
CPN을 이용할 경우 지급인·수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화폐를 이용하지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동 구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전되는 Stablecoin Sandwich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국가의 개인 고객 간 송금이 발생하면 지급인 은행은 고객 계좌에서 법정화폐를 인출하여 CPN 내부에서 USDC로 전환하고, 해당 USDC를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수취인 은행의 CPN 계정으로 전송한다. 이후 수취인 은행은 수신한 USDC를 현지 통화로 전환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다(그림6 참조).

이처럼 Stablecoin Sandwich 방식을 적용한 CPN은 고객이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등 결제사 앱의 사용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참가기관 간 정산 구간(Back-end)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송금 처리 시간과 네트워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14) Ethereum, Solana, Avalanche 등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며 참가기관은 운영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15) 2025.11. 7. 기준 최근 30일 거래량으로 추정한 수치이다(Circle, Circle Reports Third Quarter 2025 Results, 2025.11.12.).

〈그림6〉 CPN 기반 국가간 송금 · 결제 프로세스



자료 : 최명원,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서비스 동향, 금융결제원 Payment Insight 제20호, 2025. 9, 55p.

3) SWIFT 대비 효율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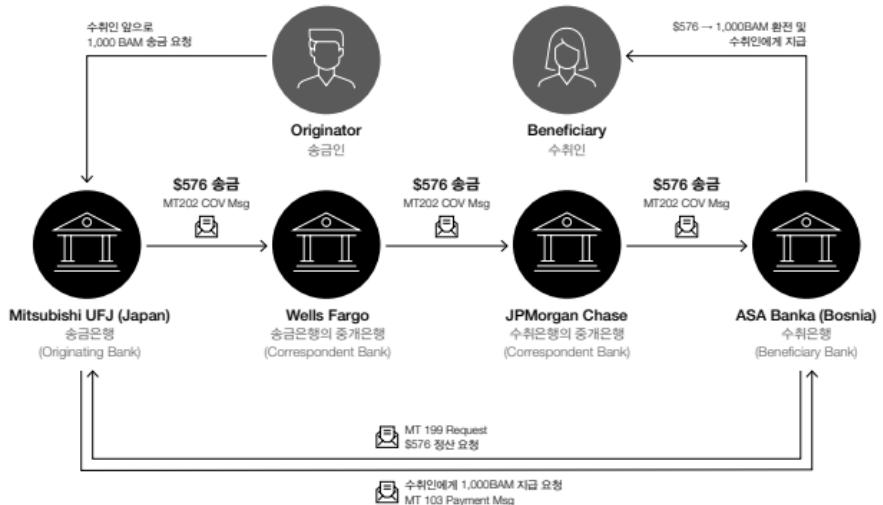
① 거래 수수료 및 거래시간 절감

대표적인 국가간 거래 인프라인 SWIFT는 글로벌 금융기관 간 메시지 통신망으로 200여개국 1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국가간 거래의 전통 핵심 인프라이다. SWIFT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거나 은행 계좌를 운용하지 않으며, 지급 지시를 안전한 표준화 메시지로 교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따라서 SWIFT를 통해 참가기관간 표준화된 송금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참가기관 계좌 간 자금이동이 수반되어야 송금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송금은행이 고객의 송금지시를 접수하면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메시지를 수취은행으로 전송하고 승인 시 자금을 송금한다. 이때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자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은행 간에 직접 메시지 전송 및 자금이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개은행(Correspondent Bank)의 개입이 불가피하다.¹⁶⁾ 만일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모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공통의 중개은행이 없다면 〈그림7〉과 같이 복수의 중개은행을 통해 거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거래에 중계은행 수수료가 추가되고 거래 처리시간도 가중된다.

16) A은행이 B은행에 자행 계좌를 개설하였을 경우, 해당 계좌는 A은행 입장에서 노스트로 계좌(Nostro Account), B은행 입장에서는 보스트로 계좌(Vostro Account)라고 한다. A은행이 B은행에 노스트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A은행은 자행 내 송금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고, B은행에는 A은행 명의의 노스트로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도록 지시한다. B은행은 A은행의 보스트로 계좌에서 송금액 만큼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다.

〈그림7〉 SWIFT 기반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 예시



자료 : 최명원(2025) 56p.

물론 CPN을 통한 국가간 송금 시에는, 수취기관 수수료(Payout Fees), 온·오프램프 과정에서의 환율 스프레드(FX Spreads),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CPN Network Fee) 등이 부과된다. 이러한 구조는 SWIFT의 자금이동 시 부과되는 메시지 중계 수수료(건당 약 0.05~0.30달러), 수취기관 수수료, 환전 수수료(FX margin) 등과 유사하다.

다만, CPN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참가기관 간 직접 거래 구조로 중계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가기관(PFI)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실질적인 송금 수수료 부담은 SWIFT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실제 사례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 RedotPay는 CPN을 활용해 고객 대상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출시 프로모션 기간 동안 0% 수수료 정책을 운영한 바 있다.¹⁸⁾

또한 SWIFT의 경우 시차에 따른 은행 간 운영시간의 차이로 인해 거래 완료까지 통상 1~3일이 소요되는데, CPN은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검증 및 처리되어 연중무휴 실시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유동성 기회비용 감소

SWIFT 기반 국가간 송금에서는 송금은행 및 수취은행, 필요시 중개은행 간의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좌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개별 은행은 각 국가의 중계은행에 노스트로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자금을 사전 예치해야 된다. McKinsey와 SWIFT의 국가간 결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국가간 결제의 비용구조는 90% 이상 개선 여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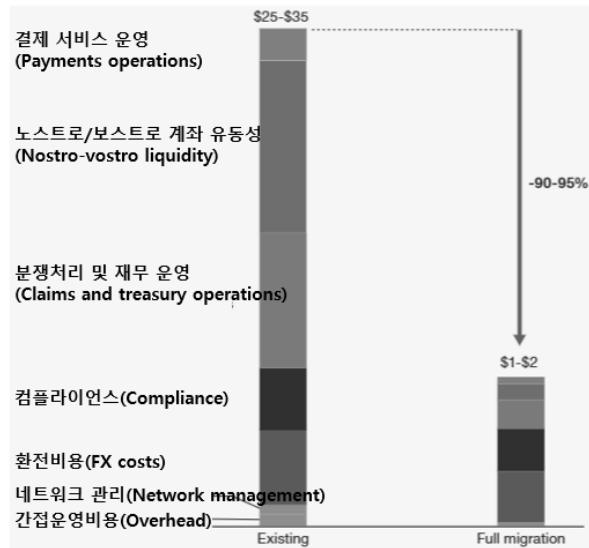
17) 은행마다 해외송금 수수료 산정 방식이 상이하나, 통상 중계은행을 경유할 경우 평균 18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18) crypto.news, RedotPay taps Circle for crypto-to-fiat transfers, launches in Brazil, 2025. 6. 2., <https://crypto.news/redotpay-taps-circle-for-crypto-to-fiat-transfers-launches-in-brazil/>

있으며, 이중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좌에 묶인 유동성 자금의 기회비용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그림8 참조).¹⁹⁾

CPN을 이용할 경우 참가기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취은행 지갑으로 직접 USDC 전송이 가능하여, 자행 계좌에 법정화폐를 예치하거나 CPN 내 지갑 계정에 일정 USDC를 보유하면 되므로, 기존 국가간 송금망 대비 사전 예치금을 줄여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림8〉 국가간 결제 비용구조 및 절감 잠재력



자료 : Mckinsey & SWIFT, A vision for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2018.10, 10p

나. Front-end 서비스 : PYUSD와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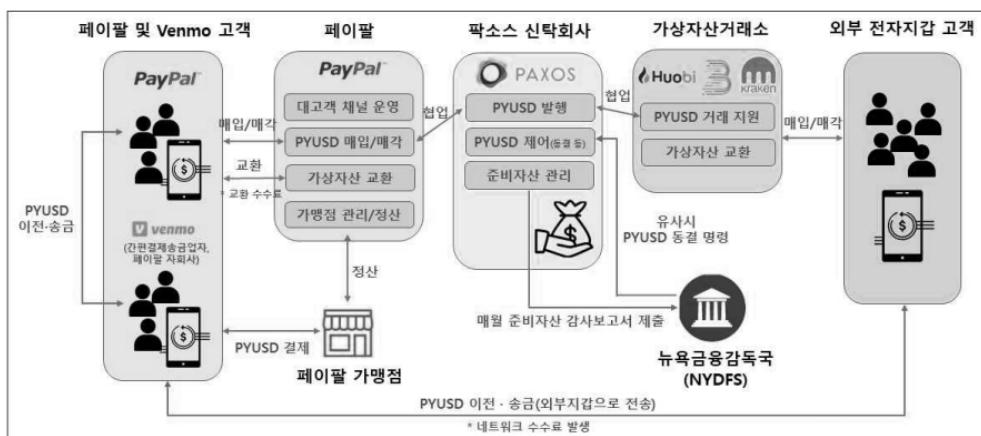
개인 또는 가맹점과 직접 연계하여 결제·송금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Front-end 영역에서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주로 카드나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선불계정을 충전하여 이용하는 구조였다. 다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PYUSD 기반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와 기존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비교함으로써, Front-end 영역에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 Mckinsey, A vision for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2018.10.

1) PYUSD 개요

글로벌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사인 Paypal은 2023년 8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 출시를 발표하였다. 사실 PYUSD의 발행 주체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 Paxos로, Paxos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서 PYUSD의 발행, 준비자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발행된 PYUSD는 PayPal의 결제·송금 생태계 안에서 유통된다(그림9 참조). PYUSD는 개인간 결제·송금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타 가상자산과의 교환에도 활용되는데, 2025년 11월 기준 시가총액은 28억달러로 전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1% 내외 수준으로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인다.

〈그림9〉 PYUSD 발행 및 유통구조



자료 : 한국은행,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의 거래구조 및 시사점, 2023. 9, 3p.

2) PYUSD 기반 간편결제 · 송금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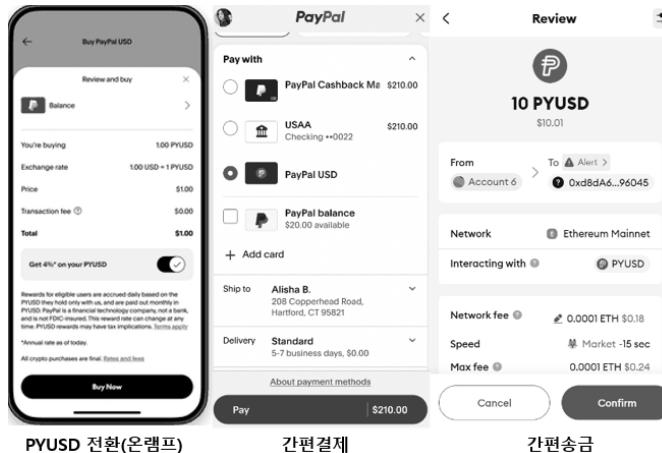
PayPal 이용고객은 앱을 통해 법정화폐를 PYUSD로 전환하고, 이를 가지고 타 가상자산 교환, 상품 결제, 개인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YUSD는 고객이 자산 및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 보관·관리하는 커스터디형 지갑(Custodial Wallet)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 고객은 기존의 지급수단 선택 창에서 PYUSD를 선택하고 승인하면 결제가 완료된다(그림10 참조). PayPal은 가맹점의 설정에 따라 PYUSD로 그대로 정산하거나 PYUSD를 즉시 달러로 오프램프하여 정산한다.

간편송금 이용 시에도 고객은 기존 계좌이체·선불충전금 방식의 UI/UX와 동일하게 수취인의 계정을 선택하고 거래수단으로 PYUSD를 지정하여 송금하면 된다. PayPal과 Venmo 고객 간 송금은 PayPal 시스템 내 계정 간 자금이동으로 오프체인 처리되어 별도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송금된다. 반면 외부 지갑으로 송금하려면 PayPal, Venmo 앱에서 수취인의 외부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수취인 외부 지갑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온체인으로 거래가 처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가 부과될 수 있다(그림10 참조).

한편 외부 지갑에서 PayPal 계정으로 PYUSD를 보낼 수도 있으나, PayPal은 고객이 직접 지갑 주소를 보유하지 않고 Paxos 커스터디 시스템 내에서 계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고객은 PayPal이 발급한 입금용 주소를 통해 수취하게 된다.

〈그림10〉 PayPal의 PYUSD 간편 결제 · 송금 화면



자료 : PayPal 홈페이지

3) 계좌이체 · 카드 ·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결제 · 송금 서비스 대비 효율성 비교

① 고객(앱 이용자) 측면

고객 경험 차원에서 PYUSD와 선불충전금 모두 유사한 결제 · 송금 프로세스를 따른다. 예를 들어 PayPal 결제창에서 지급수단으로 PYUSD를 선택하고 승인하면 지급이 완료되는데, 이는 국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기본 결제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또한, 통상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므로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송금 역시 PayPal · Venmo 고객 간 수수료는 무료이며, 외부 지갑으로 송금 시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는 동일한 간편결제 · 송금 앱을 통한 고객 간 송금은 무료이지만, 미가입 고객의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는 은행의 펌뱅킹을 이용해야 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결제 · 송금의 거래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이며, PYUSD의 주된 차별점은 결제 · 송금의 범위를 가상자산 지갑 등 블록체인 인프라 이용자까지 확장하였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자국 내 보다는 해외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결제 · 송금하는 경우에 좀 더 유리한 거래시간 ·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가맹점 측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객의 PYUSD 결제 시 대금 정산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결제 시 고객의 결제금액은 즉시 승인 또는 인출되지만, 실제 가맹점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은행 및 카드 네트워크의 승인 및 정산 주기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Alipay의 경우 시스템상 가맹점 정산까지 평균 2영업일이 소요되며, PayPal의 기존 카드 · 계좌 기반 결제 역시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약 1~8영업일이 소요된다. 반면 PYUSD로 결제할 경우, PayPal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 계정의 PYUSD가 가맹점 계정으로 즉시 이전되며, 가맹점이 은행계좌로 달러 입금을 원할 경우 1영업일 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PYUSD로 간편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레거시 인프라를 경유할 때보다 가맹점의 유동성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카드나 계좌기반 간편결제의 가맹점 수수료가 약 3~4% 수준인 반면, PYUSD 등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간편결제는 0.99%이다. 이는 가맹점 확보를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2026년 8월부터는 1.5%로 조정될 예정이나, 그럼에도 기존 지급수단 대비 약 2%p 저렴한 수수료는 가맹점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로 작용한다. 또한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했을 때 발급사가 수취하는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와 Visa/Mastercard가 수취하는 카드 네트워크 수수료(Card network fee)가 절감되므로, Paypal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보인다.²⁰⁾

종합하면, 고객 및 가맹점과 접점하는 Front-end의 경우 가맹점은 거래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만, 기존에도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간편결제 · 송금을 이용하던 고객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리테일 거래보다는 앞서 CPN 사례를 통해 보았던 국가간 송금 · 결제나, 대규모 자금 사전 예치에 따른 유동성 부담이 큰 기업결제 부문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신규 지급서비스 발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 Paypal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카드 기반 간편결제의 수수료 구조 예시에 따르면, 통상 발급사에 지급하는 Interchange fee는 약 2%, 카드 네트워크사에 지급하는 Card network fee는 약 0.5%로 추정된다(Paypal, What is IC++ and how does it work?, 2024.11.23., <https://www.paypal.com/hk/brc/article/what-is-interchange-plus-plus?>)

2. 정부 · 공공 부문 활용 사례

최근 해외에서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재정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시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USDT, USDC 등 이미 시중에서 통용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지역사회 내 거래에 적용하거나 정부가 주도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례와 기존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통사례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발행 · 유통 사례 : 미국 와이오밍(Wyoming)주 스테이블코인

1) 개요

미국 와이오밍주(State of Wyoming)는 2025년 8월 미국 주정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Frontier Stable Token(FRNT) 출시를 발표했다. FRNT는 미국이 공공부문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와이오밍주는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2023년 수립한 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규율체계²¹⁾, 운영 거버넌스, 기술 등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다(표4 참조).

현재 FRNT는 7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 및 유통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멀티체인 간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해 Layer Zero 프로토콜을 활용한다.²²⁾

〈표4〉 와이오밍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사업 추진경과

2023년	2024년	2025년
규율체계 마련	프로세스 전반 거버넌스 확립	블록체인 제휴 등 기술 구현
스테이블토큰법 (Wyoming Stable Token Act) 제정 및 발행주체인 스테이블토큰위원회 (Wyoming Stable Token Commission, WSTC) 설립	스테이블토큰법 개정을 통해 준비자산 유형 및 보유한도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세스 전반 추가 규정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등 7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블코인(FRNT) 배포 및 테스트

21) FRNT는 주정부 발행 스테이블 토큰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GENIUS ACT 적용범위에서는 제외된다.

22) 하나의 스마트컨트랙트로 Arbitrum, Avalanche, Base, Ethereum, Optimism, Polygon, Solana 등 7개 블록체인에 동시 배포되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2) 준비자산 보유방식

FRNT의 발행주체인 와이오밍 스테이블토큰 위원회(WSTC)는 FRNT가 미국 달러와 1:1로 안정적으로 폐기되도록 발행액 대비 최소 102%의 준비자산을 미국 달러 및 단기국채로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준비자산을 총 세 가지 유형의 계좌에 분리하여 보관하는데, FRNT의 가치 안정성을 위해 발행액의 최소 100%를 예치하는 신탁계좌, 즉각적인 환전 요청에 대비하여 발행액의 2%를 사전 예치해 놓는 유동성 계좌, 그 외 운영비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초과 수익 분배를 위한 관리계좌로 구성된다. 관리계좌에서 운영비용을 지급한 후 잔여금은 주정부 일반기금과 학교재단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사회로 환원한다(표5 참조).

〈표5〉 와이오밍주 스테이블코인(FRNT) 준비자산 보유 방식

신탁계좌 (Trust Account)	유동성계좌 (Liquidity Fund Account)	관리계좌 (Administration Accou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NT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행액에 준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는 계좌- 발행액의 최소 100% 예치- 현금, 만기 1년이하 미국 국채, 만기 30일 이하 미국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적인 환전(Off-Ramp) 요청에 대비하는 현금 계좌- 발행액의 2%를 예치- 준비자산 이자수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유동성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부족 시 신탁계좌 및 관리계좌에서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수수료 지급 및 초과 수익 분배를 위한 계좌- 발행액의 102%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예치- 운영비용 지급 후 잔여금은 주정부 일반기금 및 학교재단기금으로 이체

3) 활용 방식

와이오밍주는 주정부 연관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FRNT를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는 주에 소재한 기업과 연계하여 주정부 및 해당 기업의 기존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을 논의 중이다(표6 참조). 파일럿 이후에는 개인간 결제와 국가간 송금 등 일반적인 지급결제 서비스에서의 활용도 계획 중으로 알려져 있다.

〈표6〉 논의 중인 와이오밍주 스테이블코인 파일럿(Pilot) 프로그램 예시

분야(대상기업)	내용
공공기관 대금납부 (Hashfire D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주정부와 공급업체간 계약, 검증 및 대금납부를 자동화하고, 이때 FRNT를 활용
소상공인 금융 (Yerguide 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이오밍 주 지방은행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대상 대출 · 상환에 FRNT를 활용
B2B 결제 (CattlePro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의 개별 가축에 대한 품종, 예방접종 기록, 사료 급여 기록 등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검증 및 토큰화하여, 관련업체(대출기관, 도축업체)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함- 가축 거래 시 FRNT를 지급수단으로 온체인(On-chain) 결제 지원

4) 기대효과 및 전망

FRNT는 미국 정부·지자체 관점에서 달러폐권 강화, 미국 국채 수요 확대라는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효과와 더불어, 계약금 지급 및 세금 징수·환급 등의 행정처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정부가 직접 준비자산을 직접 운용함으로써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공재정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와이오밍주 사례는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주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법으로 초과담보 요건을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의 운용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은 정부 주도 스테이블코인만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공익 연계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실험으로 보이며, 일본 이시카와현의 Tochika 스테이블코인 등 여타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실험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²³⁾

나. 유통사례 : 스위스 루가노(Lugano)시 스테이블코인 도입

1) 개요

스위스 루가노(Lugano)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스테이블코인 USDT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인 LVGA를 지급 및 공공납부 수단으로 공식 도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루가노시는 블록체인·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시로 202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3AChain을 구축했으며, 해당 네트워크 상에서 루가노시 전용 지역화폐 토큰인 LVGA를 발행해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해 왔다.²⁴⁾ LVGA는 전용 모바일 앱인 MyLugano 지갑 안에서 보관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구조이다.

루가노시 정부는 2022년 3월 USDT 발행사 테더(Tether)와 함께 민관 협력사업인 Plan B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시내 상거래 및 공공수납 등 다양한 영역에서 USDT, 비트코인(BTC), LVGA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루가노시는 시에서 발행한 세금, 과태료 등 모든 청구서를 USDT와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미술관, 카페 등 450여개 가맹점에서 USDT, LVGA,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²⁵⁾

23) 2024년 선보인 이시카와 현 지자체 연계형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로, 이시카와 현 소재 민간은행인 Hokkoku Bank에서 예금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Tochika를 발행하고, 고객은 Tochika로 해당지역 소재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24) LVGA 공식 사이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준비자산 관리 여부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고, MyLugano 앱, 지역내 가맹점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결제 시 10%를 깨시백해주는 정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큰화된 지역화폐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5) 2025.11.10. 기준 455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https://planb.lugano.ch/accept-crypto/>).

2) 거래 프로세스

루가노시는 공공납부와 가맹점 결제 관련하여 각각 민관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하였는데 두 부문 모두 QR코드 기반의 결제, 오프램프를 통한 실시간 정산을 공통점으로 한다.

공공납부 부문의 경우 루가노시는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Bitcoin Suisse와 협력하여 QR코드 기반의 가상자산 납부 게이트웨이를 도입하였다. 납세자가 지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희망하여 스마트폰으로 청구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Bitcoin Suisse의 가상자산 납부 게이트웨이로 연결된다. 게이트웨이는 실시간으로 납부금액을 USDT나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표시하고, 납세자는 납부하려는 모바일 지갑과 가상자산을 선택하여 Bitcoin Suisse의 수납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한다. Bitcoin Suisse는 수취한 가상자산을 즉시 스위스 프랑으로 오프램프하여 루가노시 재무부 계좌로 입금한다.

가맹점 결제 부문의 경우 루가노시가 결제단말기 제공사인 GoCrypto와 제휴하여 가상자산 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보급하였다. 고객이 가맹점에서 계산 시 결제 단말기의 지급수단 선택창에서 USDT, 비트코인, LVGA 중 원하는 가상자산을 선택한 후, 단말기 화면에 송출된 QR코드를 보유한 모바일 지갑으로 스캔하면 GoCrypto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실시간 확인되면서 결제가 완결된다(그림11 참조). 이후 GoCrypto는 수취한 가상자산을 즉시 스위스 프랑으로 오프램프하여 가맹점으로 정산한다.

〈그림11〉 루가노시 가맹점 스테이블코인 지급 절차



① 결제 단말기에서
USDT 또는 비트코인 선택

② QR코드 송출

③ 모바일 지갑으로
QR코드 스캔하여
거래 완료

자료 : Instagram 소비자 리뷰

3) 기대효과 및 전망

루가노시는 와이오밍주처럼 지방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이 해당 인프라에 자연스럽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상거래 인프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지방정부에게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아직 USDT나 비트코인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20년부터 발행된 LVGA의 경우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루가노 시의 전용 앱인 MyLugano의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시 인구 약 6만 명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이용 비중이다. 또한 유통 중인 LVGA 규모는 약 50만 스위스프랑 수준으로, 루가노 시민 7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LVGA를 꼽았다.²⁶⁾

이러한 수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루가노 시의 서비스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디지털경제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6) Edoardo Beretta, From Bitcoin to Stablecoin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Monetary Landscape: The Case of Lugano's Plan, 2025. 4.

IV. 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

1. 대고객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경쟁에 선제적 대비

가. 전망 : 실질적 수요 확보와 이를 위한 온보딩이 관건

지금까지 살펴본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언급된 기대효과도 거래비용 절감, 대금 정산 효율성 제고, 준비자산 운용수익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개인 채널에서는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가 충분히 효율적이어서 개인 고객이 새로운 지급수단을 선택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공급자 관점에서 기존 지급결제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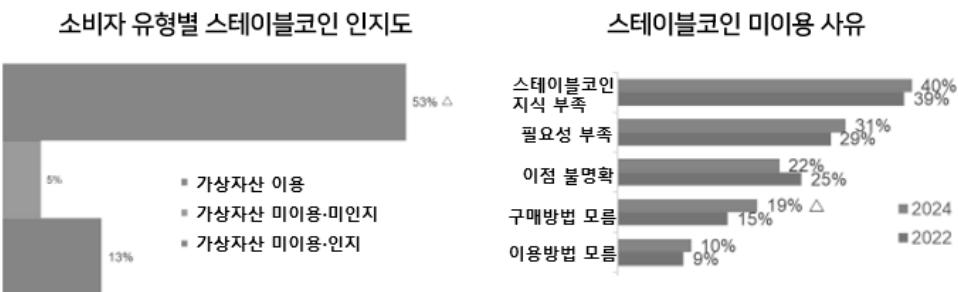
그러나 지급결제 서비스의 확산 과정은 주로 수요에서 공급으로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EY-Parthenon의 「2024 Global Corporate Stablecoin Survey」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60%가 거래 상대방 중 2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원할 경우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수준 확보될 때 공급이 뒤따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현재 기업 고객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반면 개인 고객의 대다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아는 경우에도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4」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용자의 53%가 스테이블코인을 알고 있는 반면, 단순 인지자 및 미사용자 그룹의 스테이블코인 인지도 비율은 각각 13%, 5%에 그쳤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식부족(40%)과 필요성 미인식(3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림12 참조).

종합하면 향후 지급결제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개인 고객의 니즈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고객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온보딩 및 이를 위한 유인 제공이 중요하다.

27) 응답기업의 100%가 스테이블코인에 친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3%는 이미 이용중이고 54%는 6-12개월 이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EY-Parthenon, Stablecoins in focus: navigating the new digital financial landscape, 2025. 9).

〈그림12〉 소비자의 스테이블코인 인식 및 미사용 사유



자료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4, 2024. 8, 63 · 69p

나. 대응 방향 :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온보딩 채널 준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인 고객의 인식과 수요는 아직 미미하므로, 기존 뱅킹앱이나 간편결제 앱을 제공해온 전통 결제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Web3.0 환경으로 자사 고객을 적극 온보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Coinbase는 SNS · 결제 · 송금 기능을 Web3.0의 탈중앙화 환경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슈퍼앱 Base 출시를 발표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USDC 송금 · 결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SNS 게시물을 NFT 형태로 발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Web3.0 서비스 경험을 얻을 수 있다(그림13 참조).

〈그림13〉 Base 앱(Beta ver)의 기능별 화면 예시



자료 : Coinbase 홈페이지

Base 외에도 SNS,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Web3.0 기반의 탈중앙화 앱(Decentralized App, DApp)이 지속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 DApp에서는 온체인 결제에 최적화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DApp인 Noice에서는 고객의 좋아요 · 댓글 · 팔로우 등 SNS 활동에 대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앱에 사전 연동된 고객 지갑의 USDC를 크리에이터 지갑으로 온체인으로 이전한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 온보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동시에 온체인 결제가 요구되는 DApp 서비스도 이용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인 고객의 인지 · 수요가 부족하지만, 향후 Web3.0 생태계가 본격화되어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간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뱅킹앱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 송금 기능을 도입하거나 DApp 결제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신뢰 기반 선제적 스테이블코인 B2B 거래 모델 구축

가. 전망 : 기업은 신뢰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자로 은행 선호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 고객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의지가 개인보다 뚜렷하다. 특히 이들은 B2B 거래 및 국가간 기업자금 결제 부문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접목 시 은행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Y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온 · 오프램프 및 지갑인프라 제공자로 응답기업의 68%, 63%가 은행을 선택했다. 심지어 81%는 기존 거래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신규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56%는 기존 자금관리 및 결제 플랫폼에서 API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에 활용함에 있어 신뢰 및 기존 거래와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준수 체계와 신뢰성을 갖춘, 그리고 이미 거래를 지속해온 제도권 금융회사인 은행을 스테이블코인 주요 파트너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및 기관 고객 네트워크를 기획보한 은행이 향후 스테이블코인 B2B 거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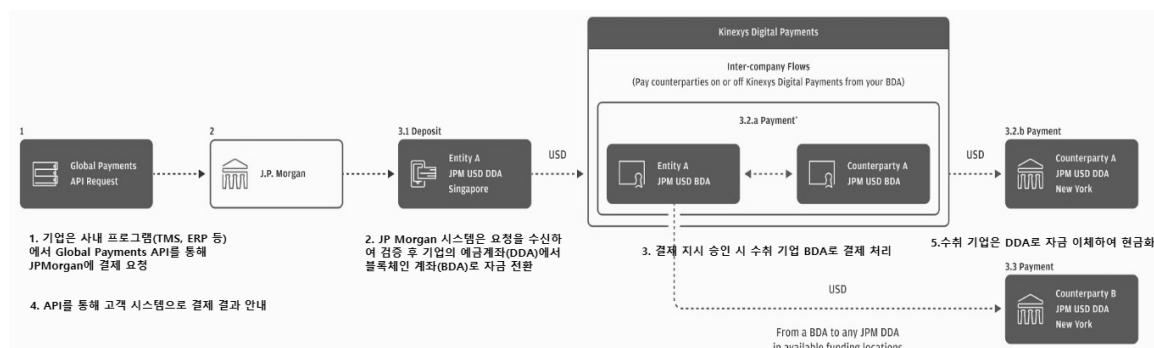
나. 대응 방향 : 기존 B2B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접목

은행은 신뢰성과 기존 거래와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기업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기반 B2B 결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고객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기업간(B2B) · 국가간(Cross Border) 결제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24/7/365 결제 환경을 구현하되, 이를 기존 기업 내 결제 시스템에서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주요 은행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JP Morgan은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B2B 결제 플랫폼인 Kinexys Digital Payments(KDP)를 구축하여 거래 기업 대상으로 USD, EUR 등 다중통화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DP는 Global Payments API를 통해 기업의 기존 자금관리시스템(Treasury Management System, TMS)이나 전사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과 연동할 수 있으며, 기업은 KDP 내 블록체인 예치계좌(BDA)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그림14 참조). 현재 Axis Bank, FedEx 등 글로벌 기업이 KDP 솔루션을 도입하여 국가간 결제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2025년 10월 JP Morgan과 협업을 통해 KDP기반 해외송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JP Morgan은 이외에도 퍼블릭 블록체인 Base 기반으로 예금토كن JPMD를 발행하여 기업고객 대상으로 시범운영 함으로써, USDT, USDC 등 비은행 스테이블코인과의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림14〉 Kinexys Digital Payments(KDP) 프로세스



자료 : JP Morgan Payments Developer 홈페이지

3. 공공 부문과의 협업 가능성 모색

은행권은 앞서 살펴본 B2C 및 B2B 결제 부문에서의 역할 확보 노력과 더불어, 공공 목적의 정책사업 또는 이니셔티브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대비 높은 신뢰성을 강점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정책 이행에 있어 은행권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을 정부·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와이오밍주와 스위스 루가노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공공부문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정책적 목적은 국가·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 니즈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일본 이시카와현의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Tochika 사례 등 공공부문이 은행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구조, 서비스 운영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일본 이시카와현 · 훗코쿠은행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Tochika

일본 이시카와현 소재의 지방은행인 훗코쿠은행(Hokkoku Bank)은 2024년 4월 일본 최초로 예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토치카(Tochika)를 발행하였다. 훗코쿠은행이 관할 지자체인 스즈시와 공동개발한 토치즈카(Tochituka) 앱에서 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토치카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지역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0.5%를 포인트(Tochipo)로 적립할 수 있다. 토치카 서비스는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 이시카와현 내 2,50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2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 중이다.

토치카는 충전, 간편결제 등 거래 프로세스가 한국 네이버페이, 중국 Alipay 등의 선불충전금 방식과 유사하지만 기술 파트너사인 Digital Platformer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맹점에게는 빠른 정산과 낮은 결제수수료(0.5%)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경제주체의 거래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디지털 지역화폐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치카 발행(충전) 및 결제 프로세스 예시



자료 : Tochituka 홈페이지

4. 규제준수 및 거래지원 인프라 관련 은행권 공동대응 고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국내 입법이 진행 중으로, 세부적인 규율사항이 확정되기 전이나,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준수, 준비자산의 주기적 검증, 온체인·오프체인 거래 데이터 기반 이상거래·사기 탐지 등 다양한 안전성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 준수를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고 정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해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면, 규제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시장은 여전히 현금·계좌이체·카드·선불충전금 등 법화 기반 지급수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화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구조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법화로 움직이던 실물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뢰성과 사용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원할 때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즉시 법화로 전환할 수 있는 온·오프램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향후 국내에서 원화 및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사업자에 의해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발행·유통될 경우, 현재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 방식이나 기관 대상 발행분의 재배포 방식으로는 이용자 관점에서 온·오프램프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유통사 간 상호호환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상환 인프라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래지원 인프라의 공동 구축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²⁸⁾

정리하면 규제 대응과 거래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영역에서는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화 지급수단이 유통되고 있는 오프체인 인프라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를 대체하려는 접근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스테이블코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28) 실제 2025년 3월, 미국 펀테크사 Ubyx는 스테이블코인 청산·상환 인프라(Ubyx Clearing Network)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Ubyx는 서로 다른 발행사가 여러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액면가로 상환·청산해주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발행사와 수취기관이 매번 개별적으로 상환 채널을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는 자금조달 후 Ripple, Paxos 등 파트너사와 함께 보안 및 규정 준수 등 구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Ubyx, Ubyx Whitepaper, 2025. 3.)

V. 맷으며

본고에서는 지급결제 부문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은행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국내의 경우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기 전으로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비용·시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도권 금융기관과 글로벌 결제사들이 관련 실험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장은 그동안 효율성과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효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 비효율이 남아 있거나 새로이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이 등장하는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여지와 유인이 있어 보인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크게 3가지를 짚을 수 있다. ① 중계은행을 포함한 전통 결제망의 수수료 및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Cross-border 결제 분야, ② 대규모 자금 사전 예치에 따른 유동성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B2B 결제 분야, ③ 아직 초기 단계이나 활성화 시 사용자의 자발적인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DApp 기반의 온체인 지급서비스가 바로 그러한 분야이다.

상기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대체하는 ‘창조적 파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치평가와 규제가 확립될 때까지 단순히 관망하는 것은 향후 지급결제 시장 경쟁에서 자칫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JP Morgan의 ‘Kinexys Digital Payments’와 MOU를 체결해 해외 법인 간 송금 효율화를 추진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영역에서 국내 기업 고객과의 접점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은행권도 기존의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효율성 개선 여지가 큰 영역을 찾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차세대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임을 강조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국제금융센터, 글로벌 은행권의 디지털자산 참여 동향 및 평가, 2025.08.18.
- [2] 김갑래, USDC의 발행·상환 절차 분석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Payment Insight 제20호, 2025.09.23.
- [3] 신영증권,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쟁, 2025.06.27.
- [4] 장한샘, 주요국의 법화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금융결제원 해외 디지털금융 브리프 제8호, 2025.10.
- [5] 토스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 2025.08.
- [6]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10.
- [7] 한국은행,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의 거래구조 및 시사점, 2023.09.04.
- [8] BCG, Stablecoins, Five killer tests to gauge their potential, 2025.05.
- [9] BCG, The Future Is (Anything but) Stable, 2025.09.
- [10] Circle, Circle Payments Network WHITEPAPER, 2025.04.25.
- [11] CITI Institute, Stablecoins 2030, Web3 to Wall Street, 2025.09.
- [12] Deloitte, 2025—the year of payment stablecoins, 2025.03.18.
- [13] EY Parthenon, Stablecoins in focus: navigating the new digital financial landscape, 2025.09.
- [14]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ryptoassets consumer research 2024 (wave 5), 2024.08.
- [15] IMF, Crypto Assets Monitor, 2025.10.09.

- [16] Keyrock&Bitso, The Trillion Dollar Opportunity, 2025.
- [17] Mckinsey&SWIFT, A vision for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2018.10.
- [18] Standard Chartered, Stablecoins : The first killer apps Swiss Banking, Stablecoins in Switzerland, 2025.04.
- [19] TLIP,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Trade Logistics Information Pipeline, 2022.11.15.
- [20] VISA, Stablecoins beyond payments: The onchain lending opportunity, 2025.10.
- [21] Wyoming Stable Token Commision, Q2 2025 Report, 2025.05.14.
- [22] Wyoming Stable Token Commision, Reserves rule, 2025.08.01.
- [23] Wyoming Stable Token Commision, TERMS OF SERVICE AND WYST USER AGREEMENT, 2025.09.18.
- [24] Wyoming Stable Token Commision, Procurement, 2025.07.11.